

의안번호	2202418
의 퇴 인	정태호 의원
회 답 일	2024. 9. 10.
추계번호	24B243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5조제5항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아동, 청년, 여성, <u>장애인</u> , 노동자, 농어민, 중소기업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위원 위촉 시 의견 청취 대상에 장애인을 추가함	의무규정
	안 제22조제3항 (2050 지방탄소 중립녹색성장위원 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	지방위원회의의 구성, 운영 및 기능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함. 이 경우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아동, 청년, 여성, <u>장애인</u> , 노동자, 농어민, 중소기업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위원 위촉 시 대표성 반영 대상에 장애인을 추가함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5조제5항(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 회의의 설치)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안 제22조제3항(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 원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	

2. 상세 사유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위촉 시 장애인 계층 의견 반영 절차 마련(안 제15조제5항 및 제22조제3항)

- 현행법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을 위해 위원을 위촉할 때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기업,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듣는 등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대표성을 반영해야 하는 다양한 사회계층에 장애인을 추가하는 것임

- 현행법 제15조제2항¹⁾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수를 50명 이상 10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현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위원장 2명, 정부위원 21명, 민간위원 29명 등 52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 지방자치단체별로 둘 수 있는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위원의 정원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별 위원회의 위원 수는 5~31명으로 다양함

※ [참고자료 2]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현황(2023.10. 기준)

- 개정안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대표성을 반영해야 하는 사회계층에 장애인을 추가할 경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인원이 변동될 수 있어, 이로 인한 회의 운영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음
 - － 다만, 장애인의 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추가로 임용될 위원의 수와 위원 구성 변동 사항을 현시점에서 예측하기가 어려우므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의 추계가 곤란함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상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표 1]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 관련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내역	2024 예산
위원회 운영	전문가 정책소통	480
	회의체 운영	665
	정책이행 점검	50
	대국민 정책 소통	800
	국민참여·의견수렴	400
	국제협력	157
	탄소중립 산업전환을 위한 넷제로 얼라이언스 구축	200
사무처 운영	사무처 운영경비, 기타직보수, 공공요금 및 제세 등	2,413
계		5,165

자료: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박인재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인재	02-6788-4650	powerreset@nabo.go.kr

[참고자료 1]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현황²⁾

□ 위원회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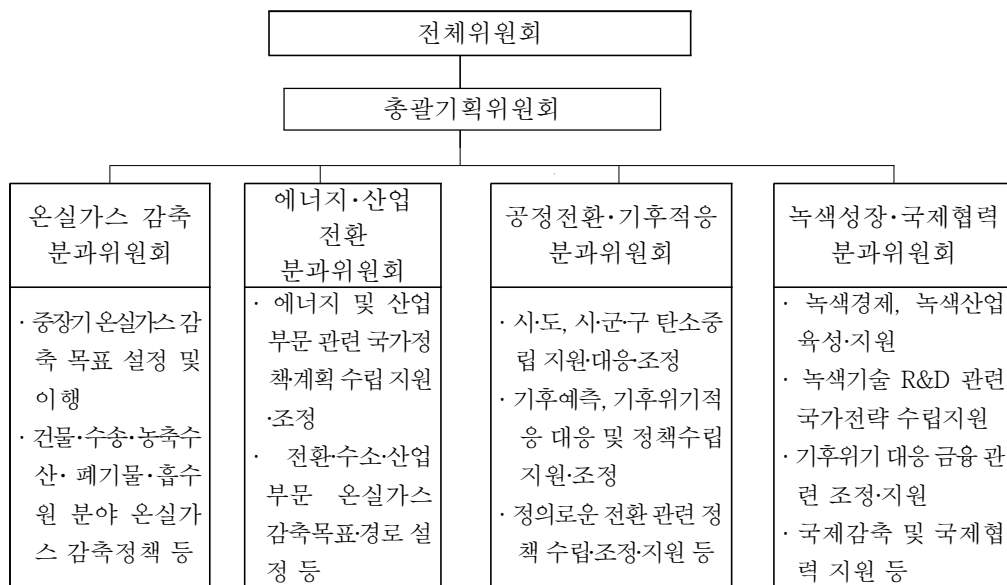
- (연혁)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21.5) →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22.3월 시행)에 따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출범
- * 근거 :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21.5월 시행)
- (기능) 사회 각계와의 소통을 기반으로 국가의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계획 심의·의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주요 기능>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 수립
- 국가비전 및 중장기 감축목표, 국가기본계획 등의 설정 및 이행현황 점검
-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변경 및 점검
-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국민 이해 증진 및 홍보·소통, 국제협력 등

□ 위원회 구성

- (위원) 총 52명
 - 위원장 2명(국무총리·민간) + 정부위원(21명)³⁾ + 민간위원(29명)
- (분과위) 총괄기획위원회 및 4개 분과위원회 구성(17개 전문위원회)
 - 4개 분과: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산업전환, 공정전환·기후적응, 녹색성장·국제협력



2)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 제출자료

3) 중앙행정기관장(21명): 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외교부, 통일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방통위, 국조실, 금융위, 산림청, 기상청

[참고자료 2]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현황⁴⁾

(단위:명)

시도	위원회 구성						관할 기초지자체		
	일 자 (예정일)	근 거 (제정일)	위원장	위 원 수			총 계	위원회 구성	
				계	당연	위촉		계	시군구명
서울	‘22.9.7.	조례 (‘22.7.11.)	행정부시장 외 1	40	10	30	25	22	종로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부산	‘22.4.21.	조례 (‘22.7.6.)	경제부시장 외 1	50	6	44	16	3	연제구, 사상구, 부산진구
대구	‘23.3.17.	조례 (‘22.6.30.)	행정부시장	15	6	9	9	1	달서구
인천	‘23.7.1.	조례 (‘22.11.9.)	행정부시장 외 1	30	8	22	10	2	부평구, 서구
광주	‘23.2.6.	조례 (‘22.4.26.)	시장 외 1	50	9	41	5	4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	‘22.12.14.	조례 (‘22.8.12.)	행정부시장 외 1	20	6	14	5	1	서구
울산	‘23.7.11.	조례 (‘22.7.28.)	행정부시장 외 1	27	3	24	5	4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세종	‘23.3.30.	조례 (‘22.4.20.)	시장 외 1	20	6	14	—	—	
경기	‘23.4.24.	조례 (‘22.7.19.)	도지사 외 1	39	15	24	31	14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화성시, 시흥시, 파주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포천시, 가평군, 연천군, 광명시
강원	‘23.10.4.	조례 (‘22.6.30.)	도지사 외 1	30	6	24	18	4	춘천시, 강릉시, 속초시, 양구군
충북	‘22.12.29.	조례 (‘22.11.4.)	도지사 외 1	30	6	24	11	3	청주시, 제천시, 진천군
충남	‘24.1.16.	조례 (‘21.12.30.)	도지사 외 1	50	9	41	15	8	천안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부여군, 홍성군, 예산군
전북	‘22.10.20.	조례 (‘22.5.13.)	도지사 외 1	30	12	18	14	6	전주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진안군, 고창군
전남	‘23.3.6.	조례 (‘22.5.19.)	부지사 외 1	40	15	25	22	7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구례군, 보성군, 해남군
경북	‘22.11.4.	조례 (‘22.9.22.)	행정부지사	24	7	17	22	3	구미시, 의성군, 울진군
경남	‘23.10.1.	조례 (‘22.7.7.)	도지사 외 1	30	8	22	18	8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거제시,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제주	‘22.11.1.	조례 (‘22.8.17.)	도지사 외 1	66	22	44	—	—	
총계	17						226	90	

4)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 제출자료, 2024.6.30. 기준